

대학 안전관리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대학 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본 대학을 출입하는 방문객과 모든 시설 및 부대장비에 적용한다.
- 제3조 (정의)** 안전관리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적절한 방지대책을 적용시켜 동종 또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으로서 불안정한 상태와 행동을 발생시키는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통제를 가하는 모든 조치 및 대책을 말한다.
- 제4조 (안전업무 우선의 원칙)** 각 부서장 및 학부(과)장은 모든 업무 또는 수업을 행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교육과 관리·운영

- 제5조 (안전교육)** 교내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 제6조 (화재예방 및 교육)** 교직원 및 학생 등은 본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교 『방화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① 교내의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에서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의 보다 안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규정』을 따로 정한다.
- 제8조 (기타 안전관리)** 본교 차량 및 식당 위생, 학생활동, 비행교육원 조종훈련 및 기타 시설 등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을 따로 정한다.

제 3 장 위해방지

- 제9조 (표지와 통보)** 주관부서 또는 관련 학부(과)에서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기술 장비 및 공기구 비품 또는 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등의 장

소에 반드시 다음 각호의 적절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중, 수리중, 위험, 사용금지, 금연 등

제10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전기시설과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산 및 소모품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화재예방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능보장 및 안전장치) ①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술장비 및 공기구구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정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장 및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소화설비의 비치) 소화용기구와 설비는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관련 소방법에 의거 적절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구급용구의 비치) 위험물 또는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학부(과)장은 업무 또는 수업 진행 중 부상이나 질병에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필요한 약품, 구급용기구 및 재료를 관련 장소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대학 안전관리위원회

제14조 (목적 및 구성) ① 본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단기 발전과제를 연구하고 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대학의 안전관리·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본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은 총장에게 귀속된다. 단, 총장은 대학 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책임관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각 행정처장, 각 단과대학장 및 비행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겸보한다.

- ④ 대학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를 지정한다.

제15조 (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본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안전관리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학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또는 사후조치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8조** (회의록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 제19조** (사고조사 및 보고) ①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사고 발생시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현장을 변경 및 훼손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안전사고 발생 관련 부서의 부서장 및 학부(과)장은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관련 부서의 부서장 및 학부(과)장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사고조사 및 현장검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0조** (준용 및 지침의 제정)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 및 정부 관련 법규에 의한다.
- ② 본 규정의 원활한 시행 및 세부사항 기준 정립을 위하여 『대학 안전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